

시설대여 조건사항

대전시립체육재활원 시설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승인함

승인조건

제1조(사용권리 발생) 시설의 사용은 시설대관이 승인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발생한다.

제2조(사용목적 및 기간)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인원은 승인된 바에 따르도록 한다. 임차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초기사용일 이전이나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임차인 행위제한) 임차인은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체육재활원 행사 또는 시설공사 등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 기간 내에 제4조의 제한행위를 한 즉시, 제9조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체육재활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시설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8. 지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체육재활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9.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10.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 시설물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위 허가조건 2항의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임차인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화재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2.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즉시 임대인과 협의 후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시, 감독) 임차인은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시,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 유의점)

1. 다목적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운동화 착용
2. 다목적체육관 바닥에 라인설치 및 일체의 고정물 설치금지
3. 시설물 바닥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사용금지
4. 기물파손 시 즉시 변상 조치
5. 사용 후 정리정돈을 실시
6.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7. 시설물 내에서 취식 및 음주·흡연은 절대 금지
8. 비인가 전열기구 및 일체의 가스사용은 금지

제10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시립체육재활원장의 결정에 따른다.